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6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2025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액으로 인한 변경 [2026년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]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	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	
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182,662	182,662	-	사업비	기금 용자금	180,000	180,0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2,021	2,021	-		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	96,460	96,460	-
					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54	254	-
전년도 예치금 회수	76,258	155,671	79,413		기금업무대행 수수료	1,350	1,350	-
일반회계 전입금	24,160	24,160	-	재무활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	-	-	-
				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2,310	2,310	-
					예치금	4,722	84,135	79,413
				기본경비	5	5	-	

[2026년 지출계획 세부 변경내역]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	비고
합 계	285,101	364,514	79,413 (1129.3%)	
중소기업 금융지원	278,064	278,064	-	
중소기업 직접융자	180,000	180,000	-	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96,460	96,460	-	
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	254	254	-	
기금 업무대행 수수료	1,350	1,350	-	
행정운영경비	5	5	-	
기본경비(기금)	5	5	-	
재무활동	7,032	86,445	79,413 (1129.3%)	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	2,310	2,310	-	
예수금원금상환	-	-	-	
예수금이자상환	2,310	2,310	-	
예치금	4,722	84,135	79,413	· 202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효진 (☎ 2133-5190)